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체육시설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942호)

2023.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유경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2. 3. 23.

다. 회 부 일 : 2022.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육경기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이용한 금액(이하 “체육시설사용분”이라 함)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체육 관련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하면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Ⅲ.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2) ☐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 사용분</td><td>30%</td></tr></table>		구분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 사용분	30%	☐ 체육시설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 및 체육시설 사용분</td><td>30%</td></tr></table> *체육시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공제한도 - 18세 미만 직계비속 1인당 문화비 공제한도 50만원씩 추가		구분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 및 체육시설 사용분	30%											
구분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 사용분	30%																					
구분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 및 체육시설 사용분	30%																					
☐ 공제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한도</th><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td><td rowspan="2">200</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문화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문화비	-																				

* 유경준의원안 2022. 3. 23. 제출(의안번호 1494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함.

☐ 공제율은 현재 기준으로 요약하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¹⁾에 대해서는 3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공제한도를 차등적용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문화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요약)]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300만원	200만원
❸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문화비)	30%			
❹ 전통시장·대중교통 ※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주: 2022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

□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사용분(공제율 15%) 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있음.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2019년 7월 1일 이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신문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고, 영화관람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에 있음.

□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신고된 체육시설²⁾은 총 52,274개소이며, 당구장 15,845개소(30.31%), 체육도장 13,830개소(26.46%), 체력단련장 9,574개소(18.322%), 골프연습장 6,554개소(12.54%) 순으로 조사됨.

2020년 12월 말 대비로는 686개소가 감소한 것으로서, 골프연습장(3,177개소)과 당구장(1,647개소)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체육시설³⁾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가 소득공제한도액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체육시설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18세 미만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씩의 추가 소득공제한도액을 부여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2) 2021년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p. 5, 문화체육관광부, 2022. 2.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구 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자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첫째, 체육시설 이용 관련 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비, 보험료 등 기존의 특별공제 항목과 같이 노동력 유지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체육시설 입장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지급한 금액 등과 마찬가지로 ‘문화비’의 일종으로 보아 체육시설 사용분에 대해서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한 수준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

둘째, 서민·중산층의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1년 생활체육 참여율⁴⁾은 60.8%로 2020년 60.1%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66.6% 보다는 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혜자 측면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은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비용을 낮추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의사결정에는 체육시설 이용비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최근 1년간 주 1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말함.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1·2·3순위 합계 기준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68.7%),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40.0%),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28.7%), ‘체육활동 지출비용 부담’(26.5%) 순으로 나타나,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용부담을 경감하더라도 체육활동 증가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둘째, 2020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에서 특정 목적 지출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공제를 우대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⁵⁾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체육시설 이용 촉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경우 나타나는 조세감면액은 향후 5년 간 438억원⁶⁾으로 추계됨.

문 의 처

02)6788-5155

5) 지난 2020년 실시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기획재정부,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0. 9.)에서 도서·공연사용분 추가공제 시행 이후 서적 소매업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6) 공제한도 추가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금액임.